

일본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와 한국에서의 함의

Adult Guardian's Misconduct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전병주*, 김건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yeong-Joo Jeon(okbjb@hanmail.net)*, Keon-Ho Kim(kkh630828@hanmail.net)**

요약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제도의 시행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본은 한국과 사회·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과 전반적인 제도의 운용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중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는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제도 정착을 지연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에서 성년후견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가정법원의 조직·인력 확충, 이중적 감독체계 및 긴급선임제도 도입 등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인 | 부정행위 |

Abstrac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akes effect from July 2013. At this point, just a month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Korea should be prepared for specific countermeasures to implement the optimized system. Japan has high similarities in social and culture matters with Korea and is evaluated that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overall operation system is similar to Korea's. As misconducts by adult guardians among the various problems occurred in Japan bring decreasing trust and delay the system settlement, proactive and posterior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these problems. Therefore, in this study, misconducts by adult guardians occurred in the enforc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Japan is to be examined and through these findings, several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prevent misconducts in Korea which include the expansion of organization and manpower in family Court, dual supervision system and emergent appointment system etc.

■ keyword : | Adult Guardianship System | Adult Guardian | Misconduct |

I. 서론

프랑스는 1960년 이래 노령과 질병 등으로 판단능력

이 부족한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정상화 이
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1].
그 후 영국, 독일, 일본에서도 그들에 대한 자립과 사회

* 이 글은 2012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변화 방향'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한 논문의 일부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

접수일자 : 2013년 05월 27일

수정일자 : 2013년 06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7월 05일

교신저자 : 김건호, e-mail : kkh630828@hanmail.net

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따라 한국 정부와 학계는 오랜 논의 끝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동안 한국에서 행위 무능력을 규율하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대한 능력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2-4].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대두되는 최근의 사회적 변화에 맞서 기존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5][6]. 이 제도를 통해서 보다 간편하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재산과 신상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온전한 삶의 향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앞둔 한국에서 이 제도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조기에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파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7]. 더욱이 기본적으로 정책이란 경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사회나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므로[8]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여러 국가 중에서 일본은 한국과 사회·문화적 유사성이 높고[9],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배경이 고령사회의 대응 및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10][11]. 또한, 후견 유형과 임의후견제도 등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 운용이 유사하므로[3][12-14]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6년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급속한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식에게 부양받는 고령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15][16]. 더욱이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그 서비스에 대한 계약화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17].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요보호성년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1999년에 도입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일본 최고재판소가 매년 발표하는 '성년후견관계사건의 현황(成年後見關係事件の概況)'[18]을 살펴보면 성년후견

관계사건(후견·보좌·보조개시 및 후견감독인 선임사건 포함)의 신청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 인구의 1%가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19][20], 일본에서는 제도 도입 후 약 26만 명이 이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18] 제도의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년후견인의 확보 및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 후견 관련 비용, 사업 중복 등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21-24]. 특히,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져 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어렵게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20][22][25].

한국에서도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일본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국내에서의 연구는 제도의 이념이나 법률 개정에 대한 고찰[3][12] 등 주로 법학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28]. 법학계의 다소 실천적인 연구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현황이나 문제에 대한 기반 없이 한국에서의 과제를 제시하여[10]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간헐적으로 진행된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접근하거나[6][26], 성년후견인의 확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13][28] 등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더욱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하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25]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중에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여 그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II장에서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내용 및 한국과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를 비교하였고, III장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발표하는 '성년후견관계사건의 현황' [18]을 중심으로 그 나라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 및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의 부정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한국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사후적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제도가 활성화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내용

한국에서는 2011년 3월에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로 공포) 되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

첫째, 성년·후견·특정후견 등의 3가지 유형을 민법에 규정하였다(민법 제9조·제12조·제14조의2)²⁾. 기존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후견제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 기존 제도의 청구권자인 본인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이외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하였고,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둘째,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 도입 및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하였다(민법 제930조, 제940조의2 내지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959조의10). 이를 통해서 노인과 장애인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에 실질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셋째,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및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을 강화하였다(민법 제947조·제947조의2).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을 통해서 피후견인의 복리를 보장하였고,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였다.

넷째,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민법 제959조의14 내지 제959조의20).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스스로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여 제한능력자의 능력을 보다 확대하였다(민법 제10조·제13조). 또한, 후견인의 법정 순위를 폐지하고,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동의권의 범위 등을 가정법원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민법 제938조·제959조의4·제959조의11).

2. 한국과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비교

과거의 일본 민법은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치산·준금치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³⁾. 더욱이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가 필요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본에서의 성년후견제도 실시 배경은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10][11]. 또한, 일본은 가족제도 및 행위능력제도가 한국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며[13],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조화하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3]. 구체적으로 후견의 유형뿐만 아니라 후견 신청권자, 후견감독인 선임 등에서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⁴⁾. 다만, 일본은 민법 이외에도 임의후견에 관한

1)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5]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 한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민법 제9조)을, 동일한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동법 제12조)을, 동일한 이유로 일시적 후인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정후견'(동법 제14조의2)을 개시하게 된다.

3) 일본은 1999년 구민법상의 금치산·준금치산제도를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번식할 능력이 결한 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견제도'(일본 민법 제7조)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번식할 능력이 현저하게 불충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좌제도'(동법 제11조), '후견 및 보좌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보호유형으로 '보조제도'(동법 제14조)로 개정하였다.

4) 한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및 감독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민법 제9조, 12조, 14조의2)의 신청에 의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일본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및 감독인, 검찰관(민법 제7조, 11조, 14조), 시정촌장(노인복지법 제32조 등의 개별법)에 의해 가능하다. 또한 한국은 가정법원을 통해서 후견감독인을 선임(민법 제940조의4, 959조의5, 959조의10)할 수 있으며, 일본은 가정재판소에 의해 후견감독인 선임(민법 제849조,

법률 등 3개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의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민법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제도 시행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5]. 물론, 한국은 일본과 사회,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독일, 미국 등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국가 중에서 일본이 사회·문화적 환경뿐만 아니라, 이 제도면에서도 한국과 상대적으로 가장 유사하다[9]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7].

III.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

1. 성년후견관계사건 현황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현황[18]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2013년 5월 최고재판소에서 발표한 2012년 성년후견관계사건의 신청건수는 34,689건으로 나타나 전년도의 31,402건과 비교하여 약 10.5% 증가하였으며, 제도 초기인 2000년의 9,007건과 비교하면 약 3.9배 증가하였다. 성년후견관계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후견개시 심판(일본 민법 제7조)의 경우에 그 제기건수는 전년대비 약 9.9% 증가한 28,47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제도의 초기인 2000년의 7,451건과 비교하면

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성년후견관계사건의 인용비율[18]은 약 91.9%로 나타나 2011년의 약 92.7%와 비교하여 다소 하락하였지만, 2000년의 68.7%와 비교하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제3자 성년후견인의 증가

최고재판소의 성년후견관계사건 현황[18]을 토대로 성년후견인 등(성년후견인·보좌인·보조인 포함: 이하 '성년후견인'이라고 함)과 본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법서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법인 등의 제3자 성년후견인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를 성년후견인에 선임하는 것은 2000년도에는 약 9.0%에서 불과하였지만, 2012년에는 약 51.5%까지 증가하여 처음으로 제3자 성년후견인이 친족후견인보다 더 많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제3자 성년후견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전문직 및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이 그들에 의한 후견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문직에 의한 후견활동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2년에 변호사와 사법서사를 중심으로 그 활동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사법서사가 전년대비 약 31.0% 증가한 6,3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것은 2000년과 비교하여 약 54.5배가 증가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변호사가 전년대비 약 40.8% 증가한 4,613건이었으며, 사회복지사가 전년 대비 약 13.8% 증가한 3,119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법률전문가에 의한 후견업무 수행이 증가하는 것은 최근까지도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가 횡령사건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법률전문가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에 의한 후견활동을 살펴보면, 일본은 과거 금치산·준금치산제도에서는 법인에 의한 후견이 불가능하였으나, 민법 개정(일본 민법 제843조)을 통하여 법인후견이 가능해졌다. 2012년에 법인에 의한 후견은 1,683건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약 21.1%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법인형태로서 수행하는 후견업무가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29], 일상

표 1. 성년후견관계사건 현황[18]

(단위: 건, %)

구분	후견	보좌	보조	후견 감독인	합계(증가율)
2000	7,451	884	621	51	9,007
2001	9,237	1,043	645	103	10,928(21.3)
...					...
2010	24,905	3,375	1,197	602	30,079(4.4)
2011	25,905	3,708	1,144	645	31,402(10.4)
2012	28,472	4,268	1,264	685	34,689(10.5)

약 3.8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의 성년후견 제도는 후견을 중심으로 모든 유형에서의 이용이 지속

876조의3, 876조의8)이 가능하다.

생활자립지원사업(日常生活自立支援事業)등의 ‘복지관련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65.0%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현재 한국에서 특정 전문가 집단이 성년후견인 선임을 그들의 사업영역으로 선점하려는 의도에서 접근하는 것과 유사하게 경제적 불황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경향도 있다.

표 2. 주요 전문직 및 법인의 성년후견인 현황[18]
(단위: 건)

구분	2000	2001	...	2010	2011	2012	
사법서사	117	395		4,460	4,872	6,382	
변호사	166	626		2,918	3,278	4,613	
사회복지사	.	.		2,553	2,740	3,119	
행정서사	.	.		.	704	829	
법인	13	47	...	961	340	402	
					사회복지 협의회		
					사법서사		
					변호사		
기타법인				796	877		

주) 사법서사법인, 변호사법인의 건수는 사법서사, 변호사 건수에도 포함.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일본에서는 사법서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직과 다양한 법인을 중심으로 제3자 성년후견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년후견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21][26] 노력과 함께 사법서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직을 선임하여 친족 성년후견인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20][25]5). 그 동안 친족 성년후견인은 그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아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타났고[25], 특히 요보호성년자의 부동산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침탈과 관련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동거친족의 성년후견인은 그 범죄를 범하여도 그 형을 면제하거나(일본 형법 제244조1항), 그 외 친족의 성년후견인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244조2항) 부정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보호 성년자와 그 가족, 시정촌 등은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 받는 법률전문가 내지는 그들을 상대적으로 더 이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등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면서 여러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지만[20][25], 아직까지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6).

3.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

일본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성년후견인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도 안정적인 성년후견인을 확보하지 못하거나[23][30][31],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제도 이용을 회피하기도 한다[32-34]. 더욱이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성년후견인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제도의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5]. 실제로 일본에서 발생하는 성년후견인에 의한 주요 부정행위는 재산횡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22] 2012년 7월 기준으로 지난 2년여 동안 성년후견인에 의한 횡령사건은 550건이며, 그 피해액은 약 54억 5,860만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에 대한 학대 등의 피해도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및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고령자학대방지법(高齡者虐待防止法)에 의해 노인 학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학대 피해자의 48%는 치매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성년후견인도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7]. 실제로 일본에서 성년후견인의 재산횡령과

5) 도치기현(栃木縣)에 있는 지적장애인 시설 입소자(시설 입소자는 약 80명)의 재산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우쓰노미야 가정재판소(宇都宮家裁)가 친족 성년후견인 1명을 해임하였다. 또한, 우쓰노미야 가정재판소는 2005~2006년에 걸쳐, 입소자의 친족 약 50명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지만, 이들 모두에 대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 관리의 권한을 변경하였다. 가정재판소의 조사 결과, 친족들은 2009년부터 입소자의 재산에서 모두 약 1억 5천만엔을 모아 그 일부를 금지된 투기적인 자산 운용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朝日新聞 2012. 8. 29).

6) 최근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주요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면, 讀賣新聞은 친족 성년후견인의 횡령사건(2013. 3. 15.), 변호사 성년후견인의 횡령사건(2013. 2. 3.), 변호사 성년후견인의 문서위조 사건(2012. 10. 1.) 등을 보도하였다. 朝日新聞은 친족 성년후견인의 횡령사건(2013. 5. 2.; 2012. 12. 1.), 사법서사 성년후견인의 횡령사건(2012. 12. 18.)을 보도하였고, 열매 전(2013. 5. 9.)에는名古屋地裁가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복동생의 예금 1,866만엔을 2006년 10월부터~2010년 10월까지 40회 이상 착복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1년 10월의 실형 선고한 바를 보도했다.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학대 등으로 인하여 가정재판소에 의해 성년후견인이 해임된 경우가 2010년에 286건이었으며, 2000년과 비교하면 약 5.5배 증가한 것이다[18].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미야자키현(宮崎縣) 경우에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10여 년간 총 81명이 해임되었는데, 그 중에서 2012년도에 가장 많은 19명이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36].

이와 같이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들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까지 증가하면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성년후견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가정재판소의 기능적 한계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20]. 결국, 실질적으로 성년후견인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감소한 탓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요보호성년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도모하고, 이 제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오히려 이 제도를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하고 악의적으로 접근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진의에 반하는 결정과 업무 수행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의도하는 경우도 있었다[35].

일본은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등 가정재판소에서 그 기능을 최종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응하기에는 가정재판소 조직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25]. 오히려 부적격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것이 가정재판소의 과실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기후현(岐阜縣)의 도노(東濃)성년후견센터, 아이치현(愛知縣)의 치다(知多)지역후견센터 등과 같은 성년후견센터를 감독기능을 위한 지역의 자체사업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여[21] 아직까지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행위에 따른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대한 피해액이 더욱 커지므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IV.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 방지대책

1. 의의

한국에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가 지속된다면 성년후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저해될 것이며,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본 제도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결과가 된다[20][21]. 또한, 성년후견인의 재선임은 물론 관련 절차의 반복으로 예산의 이중지출이 발생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갖게 된다[35]. 결국,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는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7]. 성년후견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책은 사전에 그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부정행위에 의한 피성년후견인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사후적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 사전적 방안

2.1 가정법원의 조직 및 인력 확충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있는 지역은 서울, 대전 등 5개 지역에 불과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조직 및 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실제로 2012년 2월 히로시마고등법원(廣島高等裁判所)은 히로시마가정재판소(廣島地方裁判所)가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년에 그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재산횡령이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 히로시마가정재판소(廣島地方裁判所)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내렸다⁷⁾. 한국에서도 가정법원의 조직과 인력 부족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의 조직 및 인력 확충은 더

7) 자세한 사항은 '平成22(ネ)450 損害賠償請求控訴事件'(2012. 2. 20. 廣島高等裁判所) 참조.

디게 진행되고 있다[37][38].

가정법원은 요보호성년자에 대한 심사에서부터 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감독 등 엄청나게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요보호성년자에 대한 신속한 발견과 더불어 성년후견인 선임 후의 상황 파악이 매우 중요하므로[39] 가정법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가정법원의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가정법원은 엄격하게 성년후견인 선임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우수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다양한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하면서 성년후견인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2.2 성년후견감독인의 적극적 활용

일본은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을 확대하여 후견업무에 대한 부정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민법이 개정되어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민법 제940조의4)이므로 다양한 성년후견감독인을 확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또는 민법을 재개정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임의적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내지는 정신적 결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그 외에는 임의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상황은 물론 그들의 정신적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성년후견감독인이 이것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년후견인에게 보다 충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에게 요구하는 자격과 자질수준을 민법 제937조와 같이 성년후견감독인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하여 후견업무의 관리 및 감독에 적합한 자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민법에는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보수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7].

2.3 이중적 감독 체제

지역의 공적사업에 대한 위탁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성년후견센터’와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을 활용하여 일차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가정법원이 최종적인 감독기능을 완수하는 이중적 감독체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더욱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학대 및 방임 문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처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영국과 싱가포르의 공공후견청(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OPG)과 같은 기관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이 공공후견청은 성년후견인에 대한 교육과 1차적인 감독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한 홍보기능을 담당하면서 국민 누구나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방임과 학대 사실이 의심된다면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에 대한 보호 강화는 물론 성년후견인의 본연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역의 성년후견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성년후견인에 대한 1차적인 감독을 강화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시정촌장이 신청하는 성년후견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정법원과 연계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⁸⁾. 또한, 법인형태로 후견에 참여하는 각 법인은 적절한 성년후견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와 함께 법인의 조직을 활용하여 1차적인 감독기능을 엄격하게 수행해야 하고, 법인 내에서 또는 법인간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8) 2012년 시정촌장에 의해 제기된 성년후견관계사건은 전체 사건의 약 13.2%를 차지한 4,543건이며, 전년대비 23.5% 증가하였다[18].

있다. 이외에도 감독업무 수행과 관련된 실적을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자체 정화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⁹⁾.

2.4 신상보호 영역 등의 법안정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여러 영역에서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하며, 때로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자의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특히, 고령의 피성년후견인은 의료 등의 신상보호 영역에서 성년후견인에게 재량의 여지가 많이 있으므로^[10] 그들의 권한남용 내지는 부당한 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에서 발생한 문제점¹⁰⁾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민법에서 규정하였지만, 이 영역은 피성년후견인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는 비교적 문제가 되는 여러 영역에 관하여 일본보다 진일보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40], 현장에서 이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능력 여부 및 중대한 의료행위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연명치료의 개시 및 중지, 존엄사 문제 등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상속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의 경우 정신능력법에 따라 성년후견인에게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표가 제공되어 어떤 결정이 피성년후견인에게 최선의 이익인가를 가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 의사결정의 부당 내지 불법을 견제하는 역할

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 개괄적인 민법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하위 지침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2.5 신탁제도(信託制度)의 도입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은행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신탁은행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정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체하고, 그것을 성년후견인이 관리·사용하게 되며, 당분간 사용 계획이 없는 큰 재산은 원금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을 통하여 신탁은행에서 직접 관리하게 된다. 예컨대, 주택수리 등 많은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만 성년후견인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출하게 된다. 일본은 성년후견인에 의한 주요 부정행위는 재산형령이므로^[22] 요보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어서 2012년 2월부터 후견제도지원신탁(後見制度支援信託)을 도입하였다. 가정재판소는 성년후견인 선임 단계에서 이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재는 みずほ信託銀行 등 4개 금융기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¹¹⁾. 2012년 말 기준으로 98명이 신탁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신탁한 금액의 평균액은 약4,300만 엔으로 나타났다^[18].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미국은 연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신탁을 구분하거나, 은행 예금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요보호성년자의 재산보호를 도모하고 있다^[41].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일본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금전을 그 보호대상으로 했지만, 판단능력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주택 등의 부동산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때 신탁재산의 성격을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7]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요보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9) 대한법사협회 및 사회복지사협회는 2012년부터 정부, 학계와 함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2013년 5월에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성년후견인 양성강좌를 개설하였다. 아직까지 성년후견감독인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전문직 단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10)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医療行為の同意に關するアンケート調査結果報告書)'에서는 성년후견인으로서 후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요하는 경험을 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76%가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한 성년후견인 중에서 73%가 실제로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42].

11) 일본은 현재 4개의 신탁은행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관리를 맡는 금액은 각각 다르다. みずほ信託銀行이 1엔부터 신탁을 받아들이며, りそな銀行은 5000엔, 住友信託銀行은 1000만엔, 三菱UFJ信託銀行은 3000만엔 이상부터 이용가능하다.

3. 사후적 방안

3.1 보험가입 의무화 및 손해의 전보

성년후견인 업무 수행 중의 부정행위 또는 귀책사유(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성년후견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 즉시 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다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법인후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서 보험 가입을 관리하거나, 후견활동을 하는 법인들이 공제회를 설립할 수도 있다. 시민후견인은 그들을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년후견인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형사상 책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성년후견인의 귀책사유가 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사유에 해당된다면(예컨대 횡령, 배임 등)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성년후견인이 고의 없이 피성년후견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책임의 면제 내지 경감을 해 주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후견활동을 위한 폭넓은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2 긴급선임제도 등의 후속절차 정비

성년후견인이 부정행위로 인하여 후견업무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공백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년후견인 ‘긴급선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가정법원은 간이화된 절차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적합한 성년후견인을 신속히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후보자 명부에서 임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앞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고,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는 관련 예산의 이중지

출을 초래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갖게 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저하는 물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앞둔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적 방안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여 부정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가정법원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성년후견센터 및 법인후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중적 감독체제를 확립하며, 성년후견인의 권리남용 및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신상보호 영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적 방안으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새로운 성년후견인을 신속하게 선임할 수 있는 ‘긴급선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일본 최고 재판소의 자료 및 주요 언론의 기사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부정행위 특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성년후견인의 구체적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없었던 한계점이 있다.

참고 문헌

- [1] 김현진,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 가족법연구, 제26권, 제1호, pp.71-126, 2012.
- [2] 남윤봉, “민법일부개정령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8권, 제1호, pp.47-69, 2011.
- [3] 이승길, “현행 민법상 후견제도 문제점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제11권, 제2호, pp.7-38, 2009.
- [4] 이영규, “성년후견법안의 검토 및 향후 과제”, 경

- 남법학, 제26권, pp.209-247, 2010.
- [5]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7209)*, 법무부, 2009.
- [6] 임혜경, “권리옹호 정책으로서 일본의 성년후견 제도 문제점과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1호, pp.121-144, 2009.
- [7] 전병주, *고령화 사회에 있어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논문공모전 자료집, 2012.
- [8] 최은영, 김정석, “최근 사회노년학의 연구동향”,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1호, pp.165-185, 2012.
- [9] 류애정, “일본의 사회보장-조세 일체 개혁의 검토와 시사점 모색”, *사회보장연구*, 제28권, 제4권, pp.105-127, 2012.
- [10]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과제”, *민사법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1호, pp.3-53, 2011.
- [11] 최현태, “자기결정능력 장애자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법학연구*, 제39권, pp.135-155, 2010.
- [12] 오호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와 우리나라의 성년후견법안의 비교”, 제15권, 제2호, pp.295-335, 2008.
- [13] 전형미,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제3자 후견인 확보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제11권, 제1호, pp.157-181, 2008.
- [14] 金明中, “韓國における成年後見制度の導入背景及び制度の概要:日本の先例から學ぶ成年後見制度の施行における課題”, *基礎研レポート*, 第12卷, 第5号, pp.1-13, 2012.
- [15] 김영필, “일본의 고령화와 복지사회로의 이행”, *일본문화연구*, 제25권, pp.321-341, 2008.
- [16] 서동희,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각지대의 여성 복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 pp.320-328, 2009.
- [17] 佐藤英晶, “特別養護老人ホーム入所に關わるアカウントビリティーとアドボカシー”, *帶廣大谷短期大學紀要*, 第47卷, pp.1-10, 2010.
- [18] 最高裁判所, *成年後見關係事件の概況*, 2013.
- [19] 최윤영,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제1차 장애인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 [20] 芳賀裕, “市民後見の意義と課題”, *成年後見法研究*, 第7卷, pp.76-87, 2010.
- [21] 上田晴男, “權利擁護支援としての成年後見:地域における權利擁護支援システムの構築を指して”,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雜誌*, 第625卷, pp.1-11, 2010.
- [22] 佐藤繭美, “成年後見制度をめぐる課題: 福社的經營の視點から”,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雜誌*, 第625卷, pp.12-22, 2010.
- [23] 上山泰, “日本における公的成年後見制度の導入について—ドイツの運用スキームを参考に—”,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雜誌*, 第641卷, pp.44-58, 2012.
- [24] 大藪元康·加藤蘭子, “地域福祉權利擁護事業の現狀と課題: A縣における地域福祉權利擁護事業の實態把握を中心に”, *中部學院大學短期大學部研究紀要*, 第9卷, pp.135-141, 2008.
- [25] 藤田委子, “成年後見人として社會福祉分野に求められる援助のあり方”, *名古屋經營短期大學紀要*, 第53卷, pp.121-132, 2012.
- [26] 최윤영, “사회복지적 관점의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7권, pp.97-121, 2012.
- [27] 제철웅 외,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신상보호 관계법령 정비를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2012.
- [28] 전병주, 김건호,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岡山지역의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pp.187-197, 2013.
- [29] 山口縣社會福祉協議會·山口縣法人成年後見支援センター, *成年後見制度に關する實態把握調査*, 2008.
- [30] 高田洋子, “市民參加と成年後見制度”, *福井大學教育地域科學部紀要*, 第2卷, pp.269-292, 2012.
- [31] 武藤忠義, 田中和代, “成年後見制度を担う社會福祉士の育成について”, *中部學院大學研究紀要*, 第9卷, pp.167-171, 2008.

- [32] 武市浩之, “北海道における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の現状と課題”, 北海道医療大學看護福祉學部學會誌, 第7卷, pp.5-12, 2011.
- [33] 岡部喜代子,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한림법학 FORUM, 제20권, pp.197-205, 2009.
- [34] 岩間伸之, “成年後見制度と社會福祉: その接点から新たな可能性を探る”,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雜誌, 第627卷, pp.19-29, 2011.
- [35] 박정선, “성년후견제도와 사회적 책임”, 한국장애인복지학, 제16권, pp.155-170, 2011.
- [36] 宮崎家庭裁判所, 成年後見關係事件の概況, 2012.
- [37] 김원태, “성년후견 등 심판절차에 관한 가사소송법 정비 방안에 개한 관건”, 재산법연구, 제28권, 제2호, pp.265-300, 2011.
- [38] 김상훈, “후견법원의 설치 및 그 방안에 관한 고찰”, 원광법학, 제27권, 제2호, pp.231-252, 2011.
- [39] 松下啓子, “成年後見制度における市町村長申立ての現状と課題: 大阪府下に焦点をあてて”, 社會福祉學, 第53卷, 第1号, pp.54-66, 2012.
- [40]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가족법연구, 제25권, 제2호, pp.147-198, 2011.
- [41] 송호열, “미국의 성년후견법제”, 민사법이론과 실무, 제9권, 제2호, pp.1-46, 2006.
- [42] 成年後見センター・リーガルサポート, 医療行為の同意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結果報告書, 2011.

김 건 호(Keon-Ho Kim)

정회원



- 1986년 2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1995년 3월 : 변호사
- 1998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2006년 3월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법조윤리, 민사소송, 도산

저 자 소 개

전 병 주(Byeong-Joo Jeon)

정회원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09년 8월 : 충북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2012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사회보장, 보건의료, 노인복지